

글로벌캠퍼스 취득학점포기 제도 변경 안내



2021. 7. 27.

교무처

1 학점포기제도 규정 개정 사항

○ 학칙시행세칙 제7조의 2(취득학점포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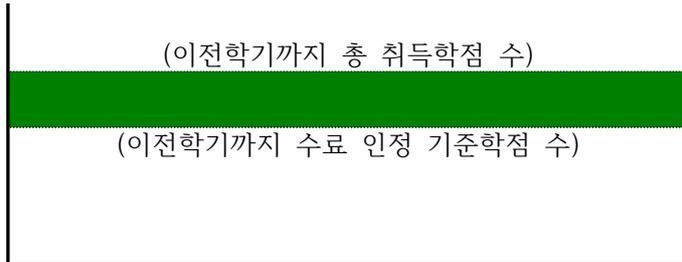
구 분	기 준	변 경 (2021. 2학기부터 적용함.)
공 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학기 이상 재학생 대상 - 매학기 지정된 기간에 시행 - 중복수강시 선이수한 1개 교과목만 졸업학점으로 인정 - 취득학점포기한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구분[W]하여 표기 - C+이하(N포함)인 교과목만 포기 가능, 재수강한 교과목은 A+ 부여 불가 	
주요 차이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포기횟수는 재학중 1회에 한함 - 9학점 이내에서만 포기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전 학기까지의 총 취득학점에서 이전 학기까지 수료 학점 기준(학칙 제31조)를 뺀 학점수에 한하여 취득학점을 포기할 수 있음. - 성적포기 횟수 제한 없음. - 수료 학점 기준 초과 학점분에 한하여 C+이하 교과목 포기 가능함. - 8학기 초과자의 경우, 총 취득학점에서 졸업이수학점을 뺀 학점 수를 학점포기 가능학점으로 함.

2 소속별 수료학점 기준 및 적용 예시

소 속	수료학점 기준		
인문사회융합대학 (유아교육과, 소방방재융합학과 제외)	구 분	1학기	2학기
	1학년	16학점이상	31학점이상
	2학년	47학점이상	62학점이상
	3학년	78학점이상	93학점이상
	4학년	109학점이상	124학점이상
디자인대학, 과학기술대학, 의료생명대학(간호학과 제외), 소방방재융합학과	구 분	1학기	2학기
	1학년	17학점이상	33학점이상
	2학년	50학점이상	66학점이상
	3학년	83학점이상	99학점이상
	4학년	116학점이상	132학점이상
유아교육과	구 분	1학기	2학기
	1학년	18학점이상	35학점이상
	2학년	53학점이상	70학점이상
	3학년	88학점이상	105학점이상
	4학년	123학점이상	140학점이상
간호학과	구 분	1학기	2학기
	1학년	18학점이상	35학점이상
	2학년	53학점이상	70학점이상
	3학년	86학점이상	100학점이상
	4학년	118학점이상	135학점이상

예) 3학년2학기 유아교육과 재학생이 5학기까지 92학점을 이수하였을 경우, 현재 4학점 범위 안에서 성적 포기 가능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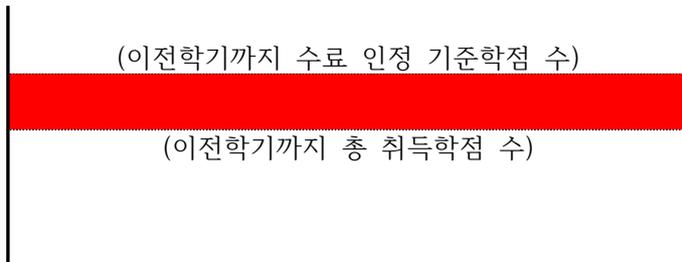
[92학점(이전학기까지 취득학점) - 88학점(유아교육과 5학기 수료 기준 학점)]



← 초록 범위만큼 성적 포기 가능



← 성적 포기 가능 학점 없음



← 성적 포기 가능 학점 없음